

#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## 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: 공급세대수의 5% 범위)

※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.

구분	내용				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</li> <li>·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</li> <li>·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</li> <li>·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,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</li> <li>·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</li> </ul>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당첨자 선정 순서: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</li> <li>■ ①지역: 해당지역 거주자(원주시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)</li> <li>■ ②배점</li> </ul>				
	배점항목	총 배점	배점기준 기준      점수	비고	
	계	100			
	미성년 자녀수(1)	40	4명 이상	40	-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
			3명	35	
			2명	25	
	영유아 자녀수(2)	15	3명 이상	15	-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
			2명	10	
			1명	5	
	세대 구성(3)	5	3세대 이상	5	-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
한부모 가족			5	-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	
무주택 기간(4)	20	10년 이상	20	-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	
		5년 이상~10년 미만	15		
		1년 이상~5년 미만	10	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(5)	15	10년 이상	15	-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	
		5년 이상~10년 미만	10		
		1년 이상~5년 미만	5		
입주자저축 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-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	
<p>※ (1), (2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</p> <p>(3)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(4), (5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: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</p>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임신의 경우 ‘임신진단서’, 입양의 경우 ‘입양관계증명서’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</li> <li>·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.</li> <li>·자녀가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·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·주택 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(23.11.10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」)</li> </ul>				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자료이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'입주자 모집공고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